#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15 발의연월일: 2025. 5. 14.

발 의 자: 박수현・이개호・양문석

강유정 · 김종민 · 양부남

황운하 • 윤종오 • 조계원

오세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의 이탈·변경을 통하여 다른 정당의 후보자나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하는 등 후보자등록의 무질서를 막고 후보자추천과 관련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하 려는 것임.

헌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 판례 또한 정당의 공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여 「대한민국헌법」 제8조제2항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정당의 권한과 그에 따른 의무의 관점에서 당적 이탈 · 변경을 금지

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권한을 보장함과 동시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내재한다고 해석하는 것 이 타당하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새로 입당하여 당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후보자등록이 제한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원이 아닌 자가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에 도 후보자등록이 제한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49조제6 항).

####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 1. 당적을 이탈 · 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
- 2.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 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 3. 당원이 아닌 자가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⑤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⑥ 政黨의 黨員인 者는 無所屬 ⑥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候補者로 登錄할 수 없으며. 候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 補者登錄期間 중(候補者登錄申 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 請시를 포함한다) 黨籍을 離脫 청시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 ・변경하거나 2 이상의 黨籍을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選擧 해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에 候補者로 登錄될 수 없다. 所屬政黨의 解散이나 ユ 登錄 1. 당적을 이탈 · 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의 取消 또는 中央黨의 시・도 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黨員 때 資格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2.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 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 같다. ·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3. 당원이 아닌 자가 당적을 취 득하는 경우 ⑦ ~ ⑤ (현행과 같음) ⑦ ~ ⑤ (생 략)